#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575

발의연월일: 2020. 9. 7.

발 의 자:임종성 · 윤준병 · 윤미향

송갑석 · 기동민 · 이원욱

윤영찬 · 소병훈 · 야진비

양 원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국내에 수입·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, 사육·재배·양도·양수·보관·운반 또 는 유통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·반 입 이후 적정 관리가 어려움.

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·재배·양도·양수·보관·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(안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).

또한,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,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함(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). 아울러,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수입·반입·사육·재배·양도·양수·보관·운반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워,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"수입 또는 반입"을 각각 "수입·반입·사육·재배·양도·양수·보관·운반 또는 유통"으로 한다.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2, 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방제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, 보상금액, 지급절차·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・반입・사육・재배・양도・양수・보관・운반 또는 유통하고 있다 고 의심되는 자
- 8.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・반입・사육・재배・양도・양수・보관・운반 또는 유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
- 9. 제24조의2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

신고·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·반입·사육·재배·양도·양수·보관·운반 또는 유통하고 있다고의심되는 자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24조의2(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제24조의2(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의 관리)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 의 관리) ① -----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 -----수입·반입·사육· 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 재배·양도·양수·보관·운반 또는 유통----다.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 (2) -----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 -----수입·반입 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 ・사육・재배・양도・양수・보 관·운반 또는 유통-----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 다. ③ ~ ⑦ (생 략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25조의2(손실보상) ① 환경부 장관은 제22조의2, 제24조제3 항 및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방제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 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 다.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, 보상금액, 지급절차 · 방 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

제30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(생략)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③ (생 략)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(현 행과 같음)
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7.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・반입・사육・재배・양도・양수・보관・운반또는 유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
- 8.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 계교란 생물을 수입・반입・ 사육・재배・양도・양수・보 관・운반 또는 유통하고 있 다고 의심되는 자
- 9. 제24조의2제1항,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·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 해우려 생물을 수입·반입·사육·재배·양도·양수·보관·운반 또는 유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
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